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42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이헌승 · 김상훈 · 서지영  
김선교 · 박덕흠 · 김승수  
성일종 · 이성권 · 유용원  
윤상현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7조제3항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7조(업무) ①·② (생   략)  <u>&lt;신   설&gt;</u>	제377조(업무) ①·② (현행과 같 음) <u>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u> <u>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u> <u>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u> <u>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u> <u>따라야 한다.</u>